

제2026-18호 2026년 3월 5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6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돌산읍 성두마을진입도로개설공사)
- 여수시 고시 제2026-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728호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735호 2026년 여수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74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망미공원)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알림
- 여수시 공고 제2026-743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에스에스테크
- 여수시 공고 제2026-744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 여수시 공고 제2026-75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변경 공고-(주)동보
- 여수시 공고 제2026-763호 도로지정 공고(선원동 410번지 외 2필지)
- 여수시 공고 제2026-774호 도로지정(변경) 공고(선원동 13번지 외 1필지)
- 여수시 공고 제2026-775호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읍·면·동

- 여수시 남면 공고 제2026-8호 2026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여수시 중앙동 공고 제2026-5호 2026년 중앙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입법 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783호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5.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산23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1553호선) 개설사업
 - 나. 명 칭: 돌산읍 성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1,952㎡
 - 나. 규 모: L=162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년월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29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읍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 계 (16필지)					15,803	1,952			
1	돌산	금성	903	도	863	17	국 (건설부)		
2	돌산	금성	117-3	도	3,443	3	국 (국토교통부)		
3	돌산	금성	산231-1	도	992	410	국 (국토교통부)		
4	돌산	금성	산232-1	도	501	501	윤경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1204동105호 (선부동,군자주공아파트)	
5	돌산	금성	산232-2	임	175	175	윤경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1204동105호 (선부동,군자주공아파트)	
6	돌산	금성	산232	임	1,228	14	윤경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3, 1204동105호 (선부동,군자주공아파트)	
7	돌산	금성	산231-2	도	236	236	여수시		
8	돌산	금성	산231	임	3,532	84	주점례	돌산읍 성두길 14-1	
9	돌산	금성	산231-4	임	87	87	여수시		
10	돌산	금성	402-4	전	3	3	여수시		
11	돌산	금성	402	전	456	77	김옥자	돌산읍 성두길 11	
12	돌산	금성	402-2	도	275	144	여수시		
13	돌산	금성	산233-1	도	793	12	여수시		
14	돌산	금성	402-1	전	651	65	김찬자	돌산읍 성두길 14-3	
15	돌산	금성	산233-3	임	1,884	56	김찬자	돌산읍 성두길 14-3	
16	돌산	금성	196	임	684	68	국 (재정경제원) 외2인		
							성두 새마을회	146	
							심승환	돌산읍 돌산로 421-13	

여수시 고시 제2026-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사업내용
	주 소	성 명				
2026-07 ('26. 2. 10.)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해양수산과)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 449-7번지 지선 공유수면	174㎡	2026. 3. 3.	공유수면 내 잘피 채취

2026. 3. 3.

여 수 시 장

공 고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수시 여자만 주변 갯벌이 「여수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목적 및 설치): 「습지보전법」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3조(위원회의 기능)

-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사업의 발굴 및 선정·신청(안)에 관한 사항
- 지역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협력 유도에 관한 사항 등

※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괭이 보호 위원회’의 기능은 본 위원회(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가 통합하여 운영 가능

○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 습지보전,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해양생물, 어업, 환경,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해양 분야 업무에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양보호구역(예정지 포함)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표, 어촌계 등)
 -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 3년, 연임 가능

○ 제8조(회의): 연 2회 개최 원칙

3. 제정조례안 : 붙임참고

4. 입법예고 기간 : 2026. 3. 3. ~ 3. 25.(22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해양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3971)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761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 나. 받는사람 : 여수시장(해양정책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3971, 팩스 061)659-5830
- 라. 이 메 일 : beagywns@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습지보전법」 및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여수시는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 밖의 보호지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사업의 발굴 및 선정·신청(안)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역 의견수렴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협력 유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상괭이보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해양보호구역 업무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
 2. 습지보전,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해양생물, 어업, 환경, 관광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환경·해양 분야 업무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해양보호구역(예정지 포함) 이해관계자(지역주민 대표, 어촌계 등)
 5.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공무원 등) 및 단체 대표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거나, 출석률이 현저히 낮아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위원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위촉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위원회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이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 및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특별한 안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에스에스테크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59-12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46249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여수-26-라-01	도장공사	2026. 3. 3.

2026년 3월 3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주)하이테크엔지니어링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366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0542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여수-26-사-04	구조물해체.비계공사	2026. 3. 3.

2026년 3월 3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사항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마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등록말소) 대상 업체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내용(당초)	처분내용(변경)	처분사유	감경근거
주식회사동보 (황해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여수-22-파-01)	영업정지 4개월 (2026. 1. 5. ~ 5. 4.)	영업정지 3개월 15일 (2026.1. 5.~ 2026.4.1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마항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2. 공고 기간: 2026. 3. 3. ~ 2026. 3. 17.(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산업 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선원동 410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선원동 410	58	2	77	도로대장 참조	
선원동 410-2	95	2	147	도로대장 참조	
선원동 434-1	17	5.5	74	도로대장 참조	

2. 기타사항

도로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8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3. .

여 수 시 장

[별 첨]

위치도 및 현황도



위치도

축척 <미지>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도로 지정(변경)공고

여수시 선원동 13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변경)합니다.

1. 위 치 : 여수시 선원동 13번지, 14번지
2. 도로면적 : 45m², 95m²
3. 도로길이 : 47m, 49m
4. 도로 폭 : 1.4m, 2.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선원동	13	대	1,771	94	
당초	선원동	14	전	810	43	
변경	선원동	13	대	1,771	45	
변경	선원동	14	전	810	95	

※ 당초 도로 지정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079호(2025. 7. 9.)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6.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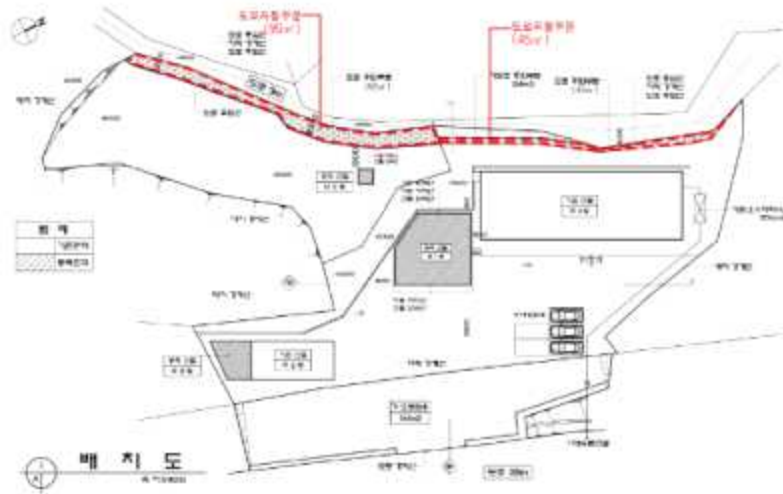
여 수 시 장

현황도



위치도

축척 <인의>



현황도

축척 | | 1/600, | | 1/1,200

2026년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여 수 시 장

1. 공고기간: 2026. 3. 4. ~ 3. 19.(15일간)
2. 위원구성: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3. 위원임기: 2026. 3. 4. ~ 2028. 3. 3. (2년)
4. 역할 및 기능
 -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위원명단: 붙임 참조
 - ※ 기타 사항은 여수시 노인장애인과(☎659-2171)로 문의 바랍니다.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성별	직업(직위)	임기	비고
1	위원장	정현구	남	여수시 시장	재임기간	당연직
2	위 원	한진숙	여	여수시 교육국장	〃	〃
3	위 원	김문환	남	여수시 건설국장	〃	〃
4	위 원	김광호	남	여수시 도로국장	〃	〃
5	위 원	정옥기	남	여수시의회의원	2026. 3. 4. ~ 2028. 3. 3.	위촉직 (연임)
6	위 원	정현주	여	〃	〃	〃
7	위 원	박연희	여	동행 장애인활동지원센터장	〃	〃
8	위 원	최종순	여	장애인종합복지관장	〃	〃
9	위 원	강형국	남	전국 장애인부모연대 여수시지회장	〃	위촉직 (신임)
10	위 원	박영철	남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여수지회장	〃	위촉직 (연임)
11	위 원	김석용	남	전남지체장애인협회여수지회장 (여수시장애포이증진지원센터장)	〃	〃
12	위 원	이 정	여	순천대학교 교수 (조경학과)	〃	〃
13	위 원	한상호	남	순천대학교 교수 (토목공학과)	〃	〃
14	위 원	손경화	여	청암대학교 교수 (사회복지학과)	〃	〃
15	위 원	이주경	여	건축사사무소 샘터대표	〃	〃

남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 남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남 면 장

1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 2025. 3. 4.(수) ~ 3. 18.(수) / 15일간
- 나. 신청기간 : 2025. 3. 4.(수) ~ 3. 18.(수) / 15일간(근무시간 내)
- 다. 접수처 : 여수시 남면 내외진길 10(남면), 남면사무소 산업팀
-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	20명 내외	2026. 4. 1. ~ 2026. 11. 30.(8개월)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기간 가감 있음 - 지역별 기간별 월별 근로일수 -															
		<table border="1"><thead><tr><th>지역</th><th>근무인원</th></tr></thead><tbody><tr><td>금오도</td><td>5명</td></tr><tr><td>연도</td><td>5명</td></tr><tr><td>역포</td><td>5명</td></tr><tr><td>화태</td><td>5명</td></tr></tbody></table>		지역	근무인원	금오도	5명	연도	5명	역포	5명	화태	5명					
지역	근무인원																	
금오도	5명																	
연도	5명																	
역포	5명																	
화태	5명																	
			<table border="1"><thead><tr><th>지역</th><th>4월 ~ 7월</th><th>8월 ~ 11월</th></tr></thead><tbody><tr><td>금오도</td><td>12일</td><td>전일</td></tr><tr><td>연도</td><td>10일</td><td>12일</td></tr><tr><td>역포</td><td>7일</td><td>8일</td></tr><tr><td>화태</td><td>4일</td><td>4일</td></tr></tbody></table>	지역	4월 ~ 7월	8월 ~ 11월	금오도	12일	전일	연도	10일	12일	역포	7일	8일	화태	4일	4일
지역	4월 ~ 7월	8월 ~ 11월																
금오도	12일	전일																
연도	10일	12일																
역포	7일	8일																
화태	4일	4일																

보수	기타
일 82,560원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과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정부·지자체합동 지침」 에 따름

※ 교통비 추가 지원 없음

3

직무 기술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가 및 유·무인도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 해안가 및 부유쓰레기 수거·운반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남면으로 되어 있고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함. -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 (직무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지리에 능통한 자
--------------	--

		관련분야 :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
응시 자격요건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남면으로 되어 있고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함. - 만 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
	경력	○ 해당없음
	학위	○ 해당없음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계층 우대 ○ 1톤 트럭 소지자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가산점		○ 해당없음

- 취업취약계층 우대 상세
 -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4 응시제한

- 가.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회피하여 공정한 채용시험을 방해하는 등 비정규직 채용 응시 제한을 받은 자
(해당 응시 일을 기준으로 3년간 응시 제한)

5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26. 3. 23.
-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6. 3. 25.(수) 10: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검증
- 면접시험 평정표

평가항목(5개항목)	점수	비고
계	50점	
가. 공공업무 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다. 긍정적 가치관 및 대인관계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라.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마. 역량검증	상상(10-9점), 중상(7-8점), 중(6-5점), 하중(4-3), 하(1-2점)	

※ 면접시험 시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 이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면접 심사기준표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

- 다. 최종합격자 : 2026. 3. 27.(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유·무선 전화 통보

6 제출서류

- 가. 참여신청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나. 정보제공 동의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라. 1톤 트럭 소유자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마. 취업취약계층일 경우 확인 서류(해당장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스스로 기재된 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채용 선발을 위해 여주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해당 채용 합격이 취소됩니다. 또한, 해당 응시일로부터 3년간 여주시 비정규직 채용 응시에 제한됩니다.
- 라.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되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류는 공고일 전 기준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 확정된 날의 14일 이후부터 구직자의 요구 시 30일 이내에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6개월 후 파기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응시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자진포기, 중도퇴사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남면사무소 산업팀(☎ 061-659-119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6.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유선전화번호	000-000-0000
이메일주소			무선전화번호	
이력사항	취업취약·연령별 계층 여부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휴.폐업자, 갱생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출소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청년층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기간	20 . . . ~20 . . .		
근무선호지역	1.	2.	3.	
과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 ① 본 신청서는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근로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의 심사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근로자 선정 및 근로자 참여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근로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26년 월 일

남면장 귀하

< 취업취약 계층 >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여부 확인
-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확인
-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⑧ 자영업 휴·폐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관할세무서 등 행정기관에 휴업(폐업)을 신고한 경우로 휴업(폐업)사실증명서 확인
-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의 지원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배우자 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⑪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별 우대계층 >

○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자

2026년 중앙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중앙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2. 27.

중 앙 동 장

1. 모집 기간 : 2026. 3. 4.(수) ~ 3. 10.(화) [7일간]
2. 모집 분야 : 주민참여예산 중앙동 지역회의 위원
3. 모집 인원 : 5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중앙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중앙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중앙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5. 활동 내용 : 주민 의견 수렴 및 자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6. 선정 기준
 - 예산·행정 등의 분야 경력과 전문성 우선 고려
 - 지역회의 위원으로서 임무수행 능력
 - 주민 참여 예산 학교 수료자는 가점 부여
7. 신청 서류 : 가입신청서, 재직증명서(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중앙동 신청자)
8. 신청 방법 : 방문 제출(여수시 중앙로 99, 중앙동주민센터)
9. 문 의 처 : 중앙동 주민센터(☎ 061-659-133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2015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이순신·원형마리나 계류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현행화 및 세분화, 여수시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혜택 제공의 필요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요트마리나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제15조 여수시민 계류비 감면 비율 및 구비서류 신설
 - 별표 2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금액 변경

○ 별표 3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중 인양기 사용료 금액 변경

3. 개정 시행규칙안: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2026. 3. 5. ~ 2026. 3. 25.(20일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6년 3월 25일(수) 17:00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기관: 여수시장(해양정책과)

- 주 소: 여수시 신월로 648,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 해양정책과

- 팩 스: 061-659-5830

- 전자메일: drago222@korea.kr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061-659-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일부개정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퍼센트”를 “100퍼센트,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5퍼센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100분의 5로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 및 별표 3의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요트마리나 계류장 시설 사용료(인상 1년차)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		
			육상계류		해상계류
계류장 및 적치장	일시사용 (척 / 일)	길이 7m미만	11,000	13,000	
		길이 7~8m미만	13,000	15,000	
		길이 8~9m미만	15,000	17,000	
		길이 9~10m미만	17,000	19,000	
		길이10~11m미만	19,000	21,000	
		길이11~12m미만	21,000	23,000	
		길이12~13m미만	23,000	25,000	
		길이13~14m미만	25,000	27,000	
		길이14m이상	27,000	29,000	
	상시사용 (척 / 월)	길이 7m미만	105,600	140,800	
		길이 7~8m미만	140,800	176,000	
		길이 8~9m미만	176,000	211,200	
		길이 9~10m미만	211,200	246,400	
		길이10~11m미만	246,400	281,600	
		길이11~12m미만	281,600	316,800	
		길이12~13m미만	316,800	352,000	
		길이13~14m미만	352,000	387,200	
		길이14~15m미만	387,200	422,400	
		길이15~16m미만	419,200	454,400	
		∴	32,000원/m 가산		
전 기	실제 사용한 전기요금				
수 도	실제 사용한 상수도요금				
비 고	1. 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16일 이상을 말하며, 이 경우 1개월로 본다. 2. 계류장 상시 사용 시는 전기, 수도시설 사용량을 매월 합산하여 징수한다. 3.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시민일 경우 상시 사용료의 5% 감한다. 4. 15m 이상 선박은 m별로 32,000원을 인상한다.				

[별표 3]

요트마리나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별	시설물 사용		비 고
	사용구분	사 용 료	
레포트교육장	1회	50,000	
샤 위 장	1회	어 른	1,000
		어 린 이	500
세 척 시 설	1회	10,000	
인 양 기	1회	30,000	

※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를 말한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50퍼센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은 <u>100퍼센트</u>로 하며, 같은 항 <u>제3호</u>의 특별 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3. 7. 13.></p> <p>1. ~ 4. (생략)</p> <p>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u><신설></u></p> <p>3.·4. (생략)</p>	<p>제15조(사용료 감면) ① ----- ----- ----- ----- <u>100퍼센트</u>, 같은 항 <u>제3호</u>에 따른 감면 비율은 계류장 시설 상시사용료에 한정하여 5퍼센트----- ----- <u>제4호</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u>3. 주민등록초본(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분)</u></p> <p>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